



금융은 튼튼하게, 소비자는 행복하게

금융감독원

수신 수신처 참조

(경유)

사본수신

제목 부실대출채권(NPL채권) 매각시 유의사항 관련 협조 요청

1. 귀 협회(중앙회)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최근 대부업체들이 금융회사로부터 인수한 부실대출채권을 추심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채권추심으로 인한 금융소비자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발견되었는 바, 귀 협회(중앙회) 소속 회원사에 부실대출채권 매각시 아래사항을 유의하도록 전파 및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[부실대출채권(NPL채권) 매각시 유의사항]

1) 매각대상 부실대출채권의 추심금지 채권 여부 확인 강화

? 부실대출채권 매각시 관계 법률*에서 추심을 금지하고 있는 회생, 파산 또는 개인회생 채권 여부를 거래자간 상호 확인하도록 하여 부당한 채권추심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의

* 「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」 제12조 제4호

2)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매각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

3) 매각대상 부실대출채권 관련 채권원인 서류 이관 철저

? 부실대출채권 매각시 정확한 원리금 산정 및 채무잔액 확인에 필요한 대출 관계서류 (대출계약서, 대출원장 등)가 이관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

? 매각대상 부실대출채권 서류에 채무자(보증인) 본인 이외 주민번호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

4) 채권양도대상 대부업체 선정시 고려사항

? 대부업체에 부실대출채권을 매각하는 경우 「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」 준수 동의 업체 여부를 확인후 동의한 업체와 우선 거래

* 준수 동의 업체 여부는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확인 가능

금융감독원장



수 신 처 기타(327), 다(18), 가(2, 9-10, 13-16, 30, 38, 49)

담당부서 대부업검사실 (검사기획팀)

수석검사역 **이현석**

팀장

대결 2015.02.16.

엄주동

합의자

시행 대검기획-00067 (2015.02.16.)

우 150-743 /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

/ <http://www.fss.or.kr>

전화번호 02-3145-8263 팩스번호 02-3145-8274

/ hyun@fss.or.kr

/ 비공개(5)
